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7호

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4일
서울특별시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가. 정비구역 현황

구역명	위 치	구역면적(㎡)	추진단계	비고 (최초결정고시)
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	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	20,619	조합설립인가 (인가일: 2020.12.08.)	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-175호 (2011.06.30.)

나. 해제기한 연장 : 2025.12.08.까지(2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3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42)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(☎02-2670-350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